

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-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각종 위생처리 시설 설치계획수립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의 업무관장중 단서조항을 신설함(제4조 제2항)

☐ 개정조례(안) : 별 첨

☐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개정사유
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		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			
제4조 (소장) ① (생 략)		제4조 (소장) ① (헌행과 같음)			분뇨처리시설
②소장은 시장의 병을 받아 사업소		② -----			설치계획등
의 업무를 처리하며, 소속직원을		-----			사업추진의
지휘·감독한다. (신설)		-----, 다만 제3조 제3호 및 제4호			효율성 도모.
		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			
		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			